

- [] 동물용의약품도매상
[] 동물용의료기기수입업
[] 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
[] 동물용의료기기판매업
[] 동물용의료기기임대업
[] 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수입업

- [] 허가사항 변경신청서
[] 신고사항 변경신고서

※ [] 에는 해당되는 곳에 √ 표를 합니다.

접수번호	접수일	처리기간	4일
신청인 (신고인)	업소명	업종	
	허가·신고번호	최초 허가·신고일 년 월 일	
	대표자 성명	생년월일 (외국인의 경우 국적)	
업 소	소재지	전화번호	

변경사항				
구분	허가(신고)사항	변경하려는 사항	사유	비고

「동물용 의약품등 취급규칙」 제24조제1항에 따라 동물용의약품도매상·동물용의료기기(수입업·수리업·판매업·임대업)·동물용체외진단의료기기(수입업) 허가·신고사항 변경을 신청(신고) 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(신고)인

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검역본부장·국립수산물품질관리원장, 시장·군수·구청장 귀하

첨부서류	1. 건물을 이전하거나 건물의 구조 또는 설비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이전 또는 변경되는 건물의 구조 및 설비를 표시한 서류와 그 도면(동물용의료기기수리업자·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 각 1부 2. 대표자를 변경하는 경우에는 변경되는 대표자가 법 제5조제1호 본문,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1항제1호 본문,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5조제2항제1호 본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 또는 법 제5조제1호 단서,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1항제1호 단서,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5조제2항제1호 단서에 해당하는 사람임을 증명하는 전문의의 진단서 및 법 제5조제3호, 「의료기기법」 제6조제1항제3호, 「체외진단의료기기법」 제5조제2항제3호에 해당하는 사람이 아님을 증명하는 의사의 진단서(동물용의료기기 수리업자·판매업자 또는 임대업자의 경우는 제외합니다)와 변경을 증명하는 서류 각 1부	수수료 5,000원
------	---	---------------

처 리 절 차

